

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65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08. 11. .

발 의 자 : 신성철 의원
외 10인

1. 개정이유

-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,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고유가시대에 승용차 10부제, 5부제 등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혼잡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,
- 아울러 「도시교통 정비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함(안 제4조제1항)
 - 각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2,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,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
-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함(안 제5조제5항)
 - 현행 최대 “100분의 90”에서 “전액”으로 확대
-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함(안 별표1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5. 기타참고사항

- 2008년도 부담금 부과현황
- 타 시·군·구의 경감대상시설물 범위
- 타 시·군·구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

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및 동법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제21조”를 “제2조제8호”로 하고, 동조제2항제1호중 “영 제33조제6항”을 “영 제1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영 제35조제2항”을 “영 제17조제1항제18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영 제38조제5항”을 “영 제24조제6항”으로 하고, “2,000제곱미터”를 “1,000제곱미터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영 제38조제4항”을 “영 제24조제2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5항 단서를 “단,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.”에서 “다만,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내용 중 경감비율을 각각 승용차 10부제는 “100분의 10”을 “100분의 15”로 하고, 승용차 5부제는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하며, 주차장유료화는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·이행중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4조, 제35조제2항, 제38조제4항·제5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① (생략)</p> <p>1. "부담금"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"승용차10부제"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(영 제33조 제6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·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~ 9. (생략)</p> <p>제3조(단위부담금의 조정등)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및 동법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제2조제8호 ----- --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영 제16조제4항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단위부담금의 조정등) 영 제17조 제1항제18호의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4조(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)</p> <p>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<u>2,000제곱미터</u>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| <p>제4조(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)</p> <p>① 영 제24조제6항----- ----- -----<u>1,000제곱미터</u>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영 제38조제4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.</p> <p>⑤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의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. 단, <u>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.</u>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 | <p>제5조(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영 제24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다만,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| | 개정안 | | |
|---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[별표1]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(제5조제3항관련) | | | [별표1]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(제5조제3항관련) | | |
| 프로그램 | 이행 기준 | 경감 비율 | 프로그램 | 이행 기준 | 경감 비율 |
| 승용차 10부제 | ○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·출입 금지 | ○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| 승용차 10부제 | ○ _____ _____ _____ | ○ _____ 100분의 15 |
| 승용차 5부제 | ○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·출입 금지 | ○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※ 다만,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| 승용차 5부제 | ○ _____ _____ _____ | ○ _____ 100분의 30 |
| 승용차 2부제 | (생략) | (생략) | 승용차 2부제 | (원안과 같음) | (원안과 같음) |
| 주차장 유료화 | ○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안산시주차장조례에서 정한 주차 요금의 100분의 70이상 징수 ※ 다만, 기업체·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| ○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| 주차장 유료화 | ○ _____ _____ _____ | ○ _____ 100분의 30 |
| 통근버스 운영 | (생략) | (생략) | 통근버스 운영 | (원안과 같음) | (원안과 같음) |
| 시차 출근제 | (생략) | (생략) | 시차 출근제 | (원안과 같음) | (원안과 같음) |
|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| (생략) | (생략) |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| (원안과 같음) | (원안과 같음) |
| 승용차 함께타기 | (생략) | (생략) | 승용차 함께타기 | (원안과 같음) | (원안과 같음) |
| 소속종사 자에 대한 자 가용승 용차 이용 제한 | (생략) | (생략) | 소속종사 자에 대한 자 가용승 용차 이용 제한 | (원안과 같음) | (원안과 같음) |
| 기 타 | (생략) | (생략) | 기 타 | (원안과 같음) | (원안과 같음) |

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65 |
|----------|------|

제안년월일 : 2008. 11. 13.

제안자 : 도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대한 경감사항은 경감프로그램과 상관없이 10부제, 5부제 등이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수정하였음.

2. 주요골자

- 목적조항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1조).
-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의 최대치를 100분의 90으로 한정함(안 제5조제5항).

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교통유발부담금에”를 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”로 한다.

제5조제5항 중 단서 “다만,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”를 “단,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”로 한다.

